

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[별표 5] <개정 2022. 5. 25.>

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(제15조제2항 관련)

구 분	기 준	
건설기계대기장	200㎡ 이상	
작업장	50㎡ 이상	
설 비	명 칭	수 량
	유압프레스기	1대 이상
	공기압축기	1대 이상
	문자용자동페인트로링기	1대 이상
	전기식자동건조로	1식 이상
	번호표 압형	1조 이상
	차대번호 새김 설비	1조 이상
	그 밖의 설비	시·도지사가 등록번호표의 제작과 등록번호표의 새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구류

비고: 「자동차관리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차대번호 새김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등록번호표제작자의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.